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소특화단지 지정 변경 신청 근거 마련〉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60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15.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특화단지는 지정 이후에도 산업환경의 변화, 수소경제 관련 정책의 변경, 기반시설 구축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정 당시의 면적·위치·사업시행기간·시행방법 등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특화단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그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2(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의 변경) ①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수소특화단지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지원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임.¹⁾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²⁾에 따르면 수소특화단지로서 지정받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특화단지 지정 이후 산업환경의 변화, 수소경제 관련 정책의 변경, 기반시설 구축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정 당시의 면적이나 위치, 사업시행기간 등 지정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지정 변경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소경제 이행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소특화단지의 신청 자격, 지정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소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수소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수소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소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수소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수소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정받으려는 수소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소특화 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 규정³⁾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 이후 산업환경이나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동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변경 절차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9조 역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변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⁴⁾

다만, 개정안은 수소특화단지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 주체를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규정하고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소경제 이행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소특화단지의 신청 자격, 지정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6조에 따라 승인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있는데,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주체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특화단지 지정 이후 산업환경 및 정책방향 등 대내외 환경 변화 발생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3

참고

수소특화단지 개요 및 지정현황

□ 개요

- (개념) 수소사업자 및 지원시설의 집적화와 수소전기차·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지원을 위해 「수소경제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 (지정요건) ●수소산업 집적도(10%↑ 또는 클러스터 확정지), ●기반시설, ●지역주요 산업과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를 종합 평가해 지정
- (지정절차) 평가위원회(공무원·전문가 10人)에서 수소특화단지 육성 계획(지자체 작성) 검토·평가 → 수소경제추진위원회(위원장:총리) 심의·의결

□ 지정 현황

-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24.11, 총리 주재)에서 수소특화단지 최초 지정
 - 지자체 공모를 거쳐, 강원(동해·삼척)과 경북(포항) 지정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 (비전) 수소특화단지 중심의 기술상용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견고하고 속도감 있는 저장·운송 산업 성장 실현 ○ (위치) 동해북평 제2일반산단 삼척호산 일반산단 ○ (면적) 342,192m² ○ (기간) 2025~2035	(동해) 북평 제2일반산단 ① 산업집적허브센터, 안전성 시험센터 ② 국내 최초 저장·운송 실증 테스트베드 ③ 핵심기업 입주공간(약 63개) (삼척) 호산 일반산단 ④ 수소액화플랜트(30톤/일)
경북 (포항) 수소 연료전지 특화단지	○ (비전)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 ○ (위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 (면적) 280,240m² ○ (기간) 2025~2035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① 기업집적화 코어 ② 부품소재 성능평가 코어 ③ 국산화 시범코어